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8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2
2. 비행안전 고도제한 예외 규정 신설	5
3. 비행안전구역 각 구역 간 경계부분의 표면높이 규정 완화	8
※ 참고자료	11
1. 표면높이 및 최고장애물 개념도	11
2. 비행안전구역 개념도	11
3. 국제기준과 군용비행장·민간비행장 고도제한 비교	12
4. 각 비행안전구역의 기능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
3. 회부연월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 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현행 규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¹⁾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략)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	② ----- ----- ----- ----- -----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의 최저 비행 고도]

구 분	국방부훈령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시계비행 항공기	도심 또는 인구밀집지역	1,000피트 이상 고도	다만,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부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그 외	500피트 이상 고도	
계기비행 항공기	고지대 또는 산악지역	2,000피트 이상 고도	
	그 외	1,000피트 이상 고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도제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AA 및 ICAO²⁾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항공기 등이 안전한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³⁾.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안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우선 확인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현재와 동등한 항공안전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3) 군용 공항과 일반 민간공항의 고도제한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참고자료 3 참조)

2. 비행안전 고도제한 예외 규정 신설

-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장애물을⁵⁾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략) <u><신설></u>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③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항의 최고장애물을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사실상 비행이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u>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동 개정안은 항공작전기지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을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지역은 고도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온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회복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고도제한 해제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이전 건의만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 공항 이전 건의 이후 최종 이전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며⁶⁾, 이 기간 동안 기존 군 공항은 정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항공작전기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하게 이·착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규정된 것으로서,

6)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 이전건의서 제출→이전건의서 평가→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시설공사→이전
대구 군 공항을 예를 들면, 2014년에 이전건의가 접수된 이후 2020년에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2028년 이전부지에 군 공항 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행중임. 즉, 이전건의 접수부터 이전부지 공사 완료까지에만 약 15년이 소요되고 이전 절차에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임

만약 개정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면 항공작전기지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의 항공기가 해당 항공작전기지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군사작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실제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양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부분만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은 군용기의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하여 국제기준(미국연방항공청,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맞추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으로서 기능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군 공항 이전 후 종전 비행장이 비행장으로 기능하지 않음이 확정된 후에야 종전 비행장의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3. 비행안전구역 각 구역 간 경계부분의 표면높이 규정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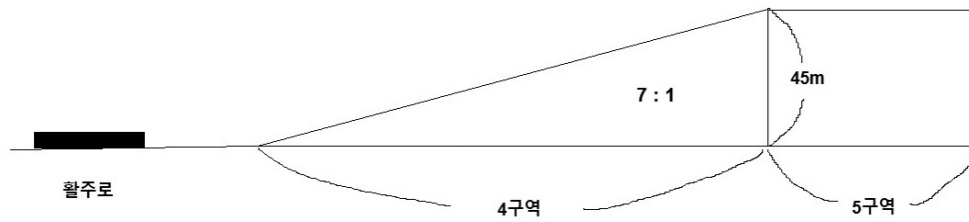
- 개정안은 동 법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구역 간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 중 현행 경계부분의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1분의 1’의 경사면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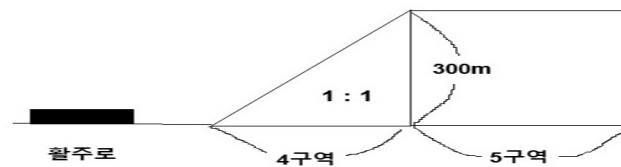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u>7분의 1</u>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1분의 1</u>----- ----- -----.

- 개정안의 내용을 전술항공작전기지를 예로 들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 규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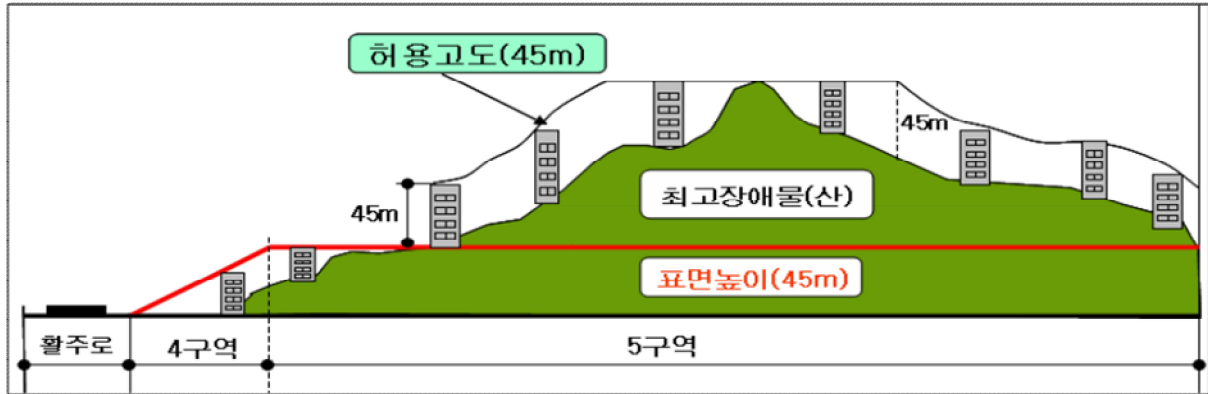
- 현행 규정은 제4구역의 한쪽 끝에서 제5구역과 접하는 곳까지 고도 제한이 7:1의 비율로 완만하게 45미터로 상승하는 반면,
개정안의 경우, 제4구역의 고도제한은 제5구역과 접하는 곳까지 1:1의 비율로 300미터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제4구역 안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보다는 건축물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 범위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은 항공기가 착륙을 위한 진입에 실패했을 때 탈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으로서 국제기준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현재 경사도 7분의 1(8.14도)보다 급격한 경사도 1분의 1(45도) 적용 시, 항공기의 정상적인 이·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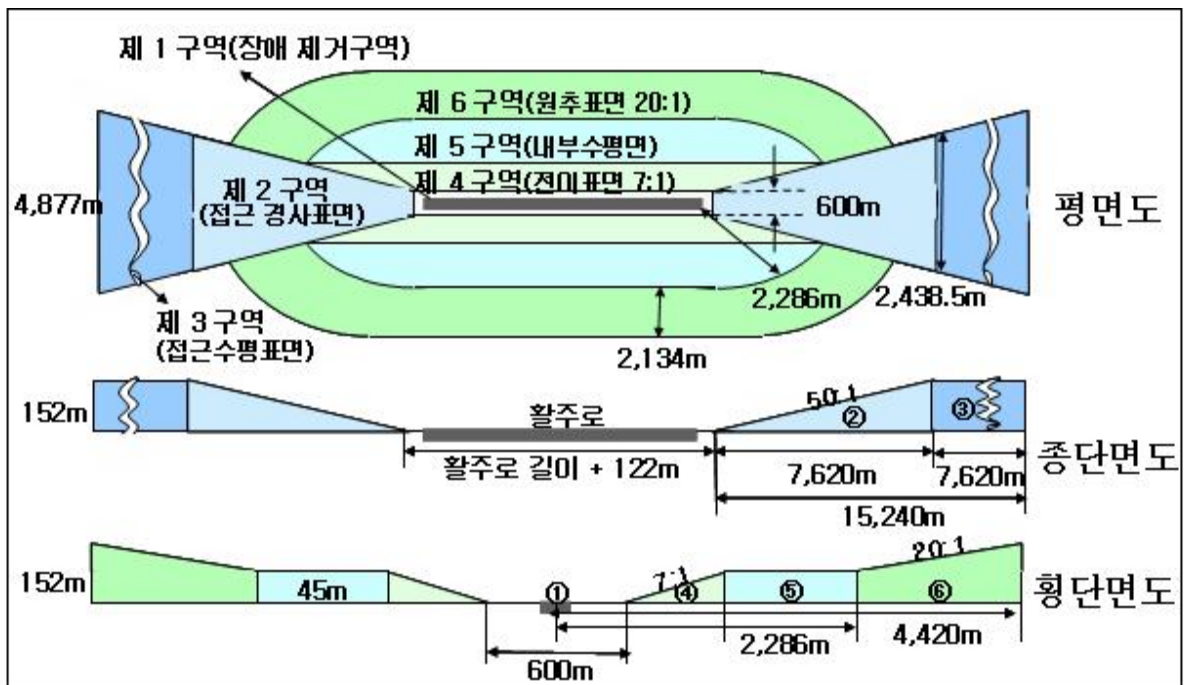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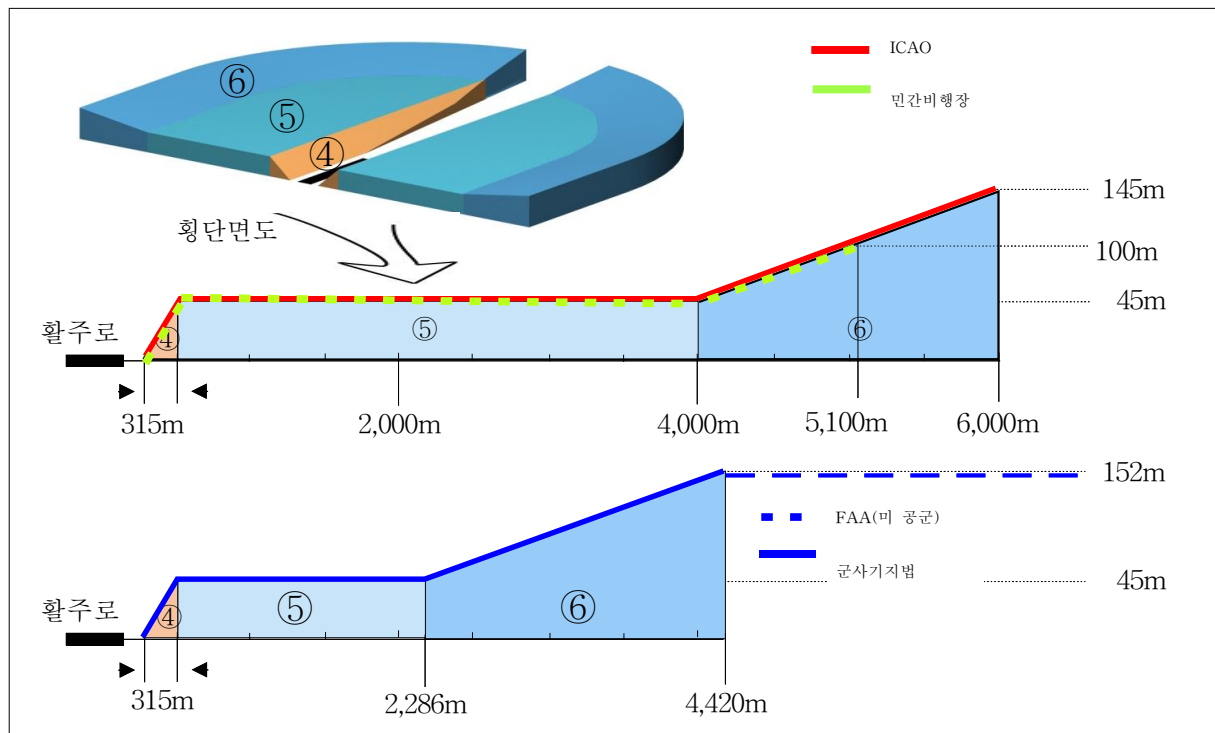
1. 표면높이 및 최고장애물 개념도



2. 비행안전구역 개념도



3. 국제기준과 군용비행장·민간비행장 고도제한 비교



4. 각 비행안전구역의 기능

각 구역	기 능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지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항공기의 이륙직후 또는 최종 착륙 시 직선비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	시계불량 시 계기착륙 또는 지상레이더 유도에 따라 정밀접근을 할 때 안전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	항공기가 착륙을 위한 진입에 실패했을 때, 복행에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 장주로 진입 시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	장주비행경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